

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간2018.01 ~ 2018.12		
사업내용	○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(9번,11번)출입구 사용료		
사업비 (당해년도)	335,813천원	(국비)	(사비)335,813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안전총괄본부	보도환경개선과	권완택 2133-8100	정종철 2133-8120	오성균 2133-8132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328,899	(x-) 335,813	(x-) 6,914	(x-) 2
사무관리비	(x-) 328,899	(x-) 335,813	(x-) 6,914	(x-) 2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
사무관리비	○ 출입구사용료 = 335,813천원 335,813,000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터미널상가 출입구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한 사용료납부 법적의무 이행 및 출입구 기능을 유지하여 이용시민의 보행불편 예방 등
 - 사용면적 : 459.9㎡ (9번 : 231.1㎡, 11번 : 264.8㎡)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(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“강남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” 판결 (대법원2014230948 제27민사부 ‘부당이득금 반환 등’)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
- 규 모 : 출입구 사용 면적 459.9㎡ (9번 출입구 231.1㎡, 11번 출입구 264.8㎡)
- 사업기간 : 2017.1 ~ 12월 (12개월)
- 사업내용 :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지급
- 총사업비 : 335,813천원

□ 추진경위

- '76. 3.25 : 서울고속버스터미널(주)에서 매입하고 '83.6.27. 등기
- '77.10.26 : 도시계획시설결정(지하도 및 출입구)
- '80. 6.24 :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준공
- '13. 4.22. : 고속터미널(주)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
- '15. 2.12. : 대법원 최종판결(패소)
- '15. 2.24. : 판결금 청구(3,881,983,900원) → 지급('15.3.13)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35,813	
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	2017.01~2017.12	335,813	서울고속터미널(주) 청구에 의거 사용료 지급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
2016년도	○ '15. 토지 사용료(3~12월) 지급 : 27,001천원 × 10월 = 270,017천원 ○ '16. 토지 사용료(1~8월) : 27,191천원 × 8월 = 217,528천원
2017년도	○ '17. 토지 사용료(1~7월) : 27,462,600원 × 7월 = 192,238,200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(점용료)를 납부하여 기능유지 및 이용 시민의 불편예방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500,000	(x-) 0	(x-) 96,307	(x-) 596,307	(x-) 596,305	(x-) 0	(x-) 2